

人間個體複製의 法的 問題

金 玟 中*

I. 序 說	2. 복제반대론의 논거
II. 類 型	V. 複製人間의 法律問題
1. 배아복제 · 개체복제	1. 허용성
2. 생식용 인간복제 · 치료용 인간복제	2. 클론자의 사법적 문제
III. 規制動向	3. 복제아-부모-관계
IV. 生命複製의 贊反論據	4. 복제인간의 부양권 · 상속권
1. 복제찬성론의 논거	5. 잡종인간의 법률문제
	VI. 결 론

I. 序 說

가. 유전학적으로 복제 혹은 클로닝(cloning)이란 세포를 무성적으로 증식시켜 기존의 동식물의 개체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개체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가리킨다.¹⁾ 인간복제란 복제기술을 인간에 적용하여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 즉 복제인간을 탄생하게 하는 생명기술이다.

나. 지난 1997년에 영국 로슬린연구소(Roslin Institute, <http://www.ri.bbsrc.ac.uk/>)에서 아이언 윌머트(Ian Wilmut)박사에 의하여 암양의 DNA유전자를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암수성교나 수컷의 정액 없이 미수정란의 핵을 제거하고 거기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여 양의 성체의 체세포에서 유래하는 핵을 가진 복제양인 「돌리」가 탄생하고, 또한 원숭이 · 쥐 · 소의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생명복제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향후전망은 <http://physics.snu.ac.kr/collq/collq920/collq.htm> 참고.

복제에 성공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동물복제를 넘어 인간복제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복제인간이 태어난 사실을 전하는 소식이 없으나, 이미 인간복제가 여러 통로를 통하여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²⁾ 복제기술상 인간복제가 동물복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때, 동일한 수정란으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다수의 인간을 만들어 낸다거나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도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인간의 생명탄생에 대한 유전공학적 조작과 달리 인간복제는 대단히 중대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II. 類 型

1. 배아복제·개체복제

가. 수정란을 이용한 배아복제 (human embryonic cloning)

생식세포복제는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어느 하나의 수정란과 동일한 인간을 만드는 복제기술이다. 생식세포복제에서는 생식세포의 핵을 채취하여 핵을 제거한 미성숙난자와 융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수정란의 세포분열을 이용하여 유전형질이 동일한 인간을 다수 복제할 수 있다.³⁾ 수정

2)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인 부부가 태어난 지 10개월만에 사고로 숨진 딸을 복제해 달라며 캐나다의 종교집단 「라엘리언무브먼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클로네이드(Clonaid, <http://www.clonaid.com/>)사에 100만달러를 지원하여 첫 복제인간이 연말에 탄생될 전망이라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2001/2/19, 미국인 부부 “사고로 숨진 딸 복제해달라”; 동아일보 2001/1/31, BBC “첫 복제인간 2003년 탄생…초기 비용 5만달러” 참조). 또한 클로네이드사에 의하면 인간복제신청을 한 한국인이 8명이나 된다고 한다(주간동아 2001/3/1.(제273호), 한국인 8명도 인간복제 신청했다 참조).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CLONAIID)와 종교단체 「라엘리언」의 창설자인 라엘은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미국정부와 교황청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복제인간은 앞으로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나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1/08/28, “복제인간, 이르면 6개월 내에 나온다”).

3) 일반적으로 인간의 수정란은 수정후 약 14일에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나면서 배아단계로 들어가고, 이 시기로부터 8주째까지는 각종의 기관이 형성되는 배아기(embryonic period)가 되며 그 후로는 이미 형성된 기관과 신체부위가 자라는 태아기(fetal period)로 넘어간다.

란이 48개의 세포로 분열한 상태에서 각각의 할구(세포)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분리하면 갈라진 세포는 각각 다시 완전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며, 각각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인공적인 일란성쌍생아가 출산될 수 있다(수정란분할법).

나. 체세포를 이용한 개체복제 (human individual cloning)

체세포복제는 생식세포 대신 비생식세포인 체세포(예컨대 머리카락세포나 피부세포)를 이용하여 그 핵을 미리 핵을 제거한 미수정난자에 옮겨(=핵치환) 세포분열을 하게 하고,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켜 체세포를 제공한 인간과 똑같은 인간을 탄생하게 하는 무성생식방법이다. 체세포복제는 모든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을 치환하고, 그 후 전기충격과 난자활성화물질을 투여하면 세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란과 같은 배아단계로 된다.

2. 생식용 인간복제 · 치료용 인간복제

가. 생식용 인간복제 (reproductive human cloning)

생식용 인간복제란 클론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진 인간을 2인 이상을 하나의 개체, 즉 생명력이 있는 인간으로서 출산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생식용 인간복제에는 수정란분할법과 체세포핵이식법 두 가지 기술이 있으며, 체세포핵이식법은 복제양 돌리를 만들 때 사용된 방법이다.

나. 치료용 인간복제 (therapeutic human cloning)

치료용 인간복제란 인간의 복제가 치료를 목적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특징이 있다.⁴⁾ 세포의 핵의 유전물질을 변환하여 그 세포핵의 핵이식에 의하여 수정란을 만들고, 그 수정란의 모체에의 이식을 통하여 이식용 클

4) 치료용 인간복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Das Klonen von Menschen, <http://www.dioesese-linz.or.at/pastoralamt/theoleh/klonen.asp> 참조.

론장기를 생성하는 경우를 치료용 인간복제라고 한다. 또한 여성의 난자에 다른 사람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주입하여 인간배아를 만들어(그대로 자궁에 이식하면 복제인간이 탄생한다) 그 배아로부터 줄기세포(stem cells)를 추출하여 줄기세포를 원하는 방향으로 배양하면 자가면역 반응이 없는 치료용 조직이나 장기를 얻을 수 있고,⁵⁾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암, 당뇨병, 에이즈와 같은 특정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의 정복을 위하여 배양한 세포나 조직·장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⁶⁾

줄기세포란 심장, 근육, 신경과 같은 각종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만능 세포이다. 현재까지는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으로는 (i) 배아복제과정을 거쳐 만드는 방법,⁷⁾ (ii) 불임치료를 위하여 만든 냉동수정란을 이용하는 방법,⁸⁾ (iii) 골수와 탯줄혈액과 같이 이미 분화와 성장이 끝난 성체를 이용하는 방법⁹⁾이 있다. 다만 인간배아복제(사람의 체세포와 동물의 난자를 융합시키는 방법도 역시)은 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생성되는 결과, 유전학적인 형질이 환자와 동일하고, 환자가 이식을 받아도 거부반응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으나, 배아복제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현재의 의학기술로 배아복제를 만들 수 있는 확율은 10-20%라고 하며, 배아복제 과정에서 무수한 배아가 희생된다). 또한 불임부부를 치료하고 남은 냉동수정란을 다시 해동시키면 배아로 키울 수 있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으나, 배아라고 하는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하는 윤리적인

-
- 5) 최근 미국의 생명공학벤처기업인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로지(ACT)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한 사실을 발표하여 인간복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동아일보 2001/11/26, 美 인간배아 복제 파장).
 - 6) 최근 인공수정된 냉동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쥐에 주입하여 초기단계의 뇌세포로 전환시킨 실험이 성공을 거두어 인간배아의 줄기세포가 파킨슨병과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신경세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동아일보 2001/12/1, 배아 줄기세포, 뇌세포로 전환 성공). 다만 줄기세포의 기술을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린다고 한다.
 - 7) 미국의 ACT사가 줄기세포를 얻은 방법이다(한국일보 2001/11/26, '인간배아복제' 거센 윤리논쟁 ACT社 첫 성공에 우려 대두...부시 "인간복제 반대").
 - 8) 국내에서도 지난 해 잉여의 수정란을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로부터 근육세포로까지 키우는 데 성공한 예가 있다.
 - 9) 국내에서도 최근 탯줄혈액을 통하여 줄기세포를 만들어 뼈세포로 키우는 데 성공한 경우가 있다.

문제는 물론, 수정란을 제공하는 불임부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타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관계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로서는 성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로 뼈·혈액·근육과 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할 때에는 복제과정이 개입되지 아니하여 윤리적 문제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없고, 또한 성체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의 양이 극히 미약하여 치료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Ⅲ. 規制動向

가. 서 론

거의 모든 국가가 복제기술의 인간에의 적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간복제기술의 적용에 대한 규제형태로서는 (i) 법률에 의한 규제,¹⁰⁾ (ii) 국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 (iii) 국가에 의한 연구자금배분의 금지에 의한 규제, (iv) 관련학회·단체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의사·연구자의 자주적 규제,¹¹⁾ (v) 개별적인 의료기관¹²⁾·연구기관에서의 윤리위원회(Ethik-Kommission)에 의한 자주적 규제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인간복제에 관한 규제에서는 (i) 인간복제에 관련되는 모든 의사·연구자 기타 참가자에 대하여 통일적·공통적 규제가 필요하고, (ii) 구체적인 실효성을 수반하는 규제가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가이드라인 이상의 공적인 규제가 적절하다고

10) 예컨대 일본에서 제정된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참조.

11) 예컨대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헬싱키선언으로 채택된 「인간개체가 포함된 의학적 연구를 위한 윤리적 기본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2) 예로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1년 11월 30일 산하 8개의 병원과 의과대학에 대하여 치료용의 목적으로도 인간배아를 이용한 중기세포의 연구를 금지한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가톨릭의 입장」이라고 하는 지침을 들 수 있다(중앙일보 2001/12/1. 인간 배아 이용한 중기세포 연구 금지 가톨릭의료원).

본다.

나. 해 외¹³⁾

(1) 미 국

미국 하원은 지난 2001년 7월 31일에 어떤 목적으로든 인간배아를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2001, H.R. 2505 by Dave Weldon and Bart Stupak)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5 대 반대 162로 통과시켰다.¹⁴⁾ 또한 미국 하원은 과학적 연구목적에 한하여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자는 관련 수정안(H.R. 2608 by Jim Greenwood and Peter Deutsch)도 249 대 178로 부결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미국에선 생식이나 난치병치료를 위한 연구를 포함해 어느 경우에도 인간복제는 불법이 되고, 법안은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¹⁵⁾ 미

13) 외국을 보면 복제양의 탄생을 계기로 유럽을 위시한 여러 국가가 복제기술의 인간에의 적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인간복제에 관한 입법동향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현 황	국가	현 황
호주	일부의 주(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에 인간복제금지법 존재	영국	치료·연구목적에 위한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스위스	연방헌법에서 배아복제를 묵시적으로 금지, 또한 최근 제정된 「인공생식의료법」에서도 명문으로 인간복제·키메라·하이브리드의 생성을 금지	미국	인간복제연구에 관한 연방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인간의 체세포에의 핵이식기술적용을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
프랑스	1994년 제정된 법률(생명윤리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금지	독일	「수정란보호법」으로 인간복제를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키메라·하이브리드를 금지
일본	「크론기술규제법」으로 인간복제를 금지	캐나다	「인간수정란의 크론생산 등에 관한 금지령」에 의하여 인간의 크론개체의 생산을 금지

14) 자세한 설명은 <http://www.righttoliferoch.org/nhouseclone.htm> 참고.

15) 하원을 통과한 인간복제금지법(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BILL To amend title 18, United States Code, to prohibit human cloning.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2001'.

SEC. 2. PROHIBITION ON HUMAN CLONING.

- (a) IN GENERAL-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chapter 15, the following:

CHAPTER 16--HUMAN CLONING `Sec.

301. Definitions.

302. Prohibition on human cloning.

Sec. 301. Definitions

In this chapter:

- (1) HUMAN CLONING- The term 'human cloning' means human asexual reproduction, accomplished by introducing nuclear material from one or more human somatic cells into a fertilized or unfertilized oocyte whose nuclear material has been removed or inactivated so as to produce a living organism (at any stage of development) that is genetically virtually identical to an existing or previously [Struck out->] existing [<-Struck out] existing human organism.
- (2) ASEXUAL REPRODUCTION- The term 'asexual reproduction' means reproduction not initiated by the union of oocyte and sperm.
- (3) SOMATIC CELL- The term 'somatic cell' means a diploid cell (having a complete set of chromosomes) obtained or derived from a living or deceased human body at any stage of development.

Sec. 302. Prohibition on human cloning

- (a) IN GENERAL-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or entity, public or private, in or affecting interstate commerce, knowingly--

- (1) to perform or attempt to perform human cloning;
- (2) to participate in an attempt to perform human cloning; or
- (3) to ship or receive for any purpose an embryo produced by human cloning or any product derived from such embryo.
- (b) IMPORTATION-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or entity, public or private, knowingly to import for any purpose an embryo produced by human cloning, or any product derived from such embryo.

(c) PENALTIES-

- (1) CRIMINAL PENALTY- Any person or entity [Struck out->] who [<-Struck out] that violates this section shall be fined under this [Struck out->] section [<-Struck out]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
- (2) CIVIL PENALTY- Any person or entity that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be subject to, in the case of a violation that involves the derivation of a pecuniary gain, a civil penalty of not less than \$1,000,000 and not more than an amount equal to the amount of the gross gain multiplied by 2, if that amount is greater than \$1,000,000.
- (d) SCIENTIFIC RESEARCH- Nothing in this section restricts areas of scientific research not specifically prohibited by this section, including research in the use of nuclear transfer or other cloning techniques to produce molecules, DNA, cells other than human embryos, tissues, organs,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humans.'

국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에 걸쳐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으며,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윤리적 차원에서 인간배아복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의원은 파킨슨병·치매 등 난치병치료의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유 럽

a) 프랑스¹⁶⁾ 프랑스에서는 1994년에 이른바 「생명윤리3법」을 제정하여 인체의 존중이라고 하는 이념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특히 「인체 존중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을 통하여 인공생식기술의 절차와 인공생식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신분을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전, 형법전을 비롯한 보건의료법, 지적재산법과 같은 법률이 개정되어 있다.

프랑스민법 제1편 제1장 제2절의 표제가 「제2절 인체의 존중에 관하여」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민법 제16조를 부활하여 프랑스민법 제1편 제1장 제2절의 서두에 「본법은 인간의 우월성을 보장하고 그 존엄에 대한 모든 침해를 금지하며, 인간은 그 생명의 시작부터 존중된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자기의 인체를 존중받을 권리, 인체의 불가침성, 인체 및 그 구성요소·산출물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고(§16의1 Code civil), 인체에 대한 불법한 침해 또는 인체의 구성요소 내지 산출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이 그 방지나 중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6의2 Code civil). 특히 「누구도 種으로서의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우생학상의 행위는 금지된다. 유전성의 질병예방 내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별도로 하고, 인간의 자손을 변질시키기 위한 유전형질의 어떠한 재생산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민법 제16조의4를 통하여 인간복제가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b) CLERICAL AMENDMENT- The table of chapters for part I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inserting after the item relating to chapter 15 the following: 301.

16) 참고: 프랑스도 인간 배아 복제 논란, 동아일보 2001/06/21.

b) 독일 독일에서는 「배아보호법」(1990)은 다른 배아, 태아, 인간 혹은 사망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배아의 생산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복제배아를 모체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치료적 클론(therapeutisches Klonen)과 생식적 클론(reproduktives Klonen)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¹⁷⁾ 또한 특히 키메라·하이브리드와 같은 「잡종인간」의 생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배아보호법 제6조 [인간복제]¹⁸⁾

(1) 인간의 배아를 다른 배아, 태아, 인간 혹은 사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배아를 부녀에게 이식한 자도 같다.

(3) 미수범도 처벌한다.

배아보호법 제7조 [잡종인간]¹⁹⁾

17) 독일에서의 클론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는 Jürgen Simon/Brigitte Jansen, Legal and Ethical Aspects of Cloning, <http://zobell.biol.tsukuba.ac.jp/~macer/EJ94/더94b.html>.

18) Embryonenschutzgesetz §6 [Klonen]

(1) Wer künstlich bewirkt, daß ein menschlicher Embryo mit der gleichen Erbinformation wie ein anderer Embryo, ein Foetus, ein Mensch oder ein Verstorbener entste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n in Absatz 1 bezeichneten Embryo auf eine Frau überträgt.

(3) Der Versuch ist strafbar.

19) Embryonenschutzgesetz §7 [Chimären- und Hybridbildung]

(1) Wer es unternimmt,

1. Embryonen mit unterschiedlichen Erbinformationen unter Verwendung mindestens eines menschlichen Embryos zu einem Zellverband zu vereinigen,

2. mit einem menschlichen Embryo eine Zelle zu verbinden, die eine andere Erbinformation als die Zellen des Embryos enthält und sich mit diesem weiter zu differenzieren vermag, oder

3. durch Befruchtung einer menschlichen Eizelle mit dem Samen eines Tieres oder durch Befruchtung einer tierischen Eizelle mit dem Samen eines Menschen einen differenzierungsfähigen Embryo zu erzeu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s unternimmt,

1. einen durch eine Handlung nach Absatz 1 entstandenen Embryo auf

a) eine Frau oder

b) ein Tier

zu übertragen oder

2. einen menschlichen Embryo auf ein Tier zu übertragen,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범금에 처한다.

1. 최소한 하나의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전인자를 가지는 배아를 하나의 세초결합체와 결합한 자
2. 배아의 세포와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며, 배아와 결합하게 계속 발생·분화할 수 있는 시를 인간의 배아와 결합시키는 자
3.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와 수정하거나, 또는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여 분화가능한 배아를 생산하려고 한 자

(2) 다음 각호의 행위를 시도한 자도 같다.

1.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a) 부녀 혹은 (b)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
2. 인간의 배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

c) 영 국 영국에는 인간의 인공생식을 규율하는 법률로 「인간수정·배연구법」(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이 있다. 영국은 지난 2001년 1월 22일에 단지 엄격한 제한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수정란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던 「인간수정·배연구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치료적’ 복제와 14일 이내의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출산목적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긴급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복제법(Human Reproductive Cloning Bill)은 인간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나 양벌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영국에서는 「프

20) A BILL To Prohibit the placing in a woman of a human embryo which has been created otherwise than by fertilisation.

BE IT ENACTED by the Queen'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

1 The offence

(1) A person who places in a woman a human embryo which has been created otherwise than by fertilisation is guilty of an offence.

(2) A person who is guilty of the offence is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or a fine or both.

(2) No proceeding for the offence may be instituted-

(a) in England and Wales,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b) In Northern Irelan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for

로 라이프 연맹」(ProLife Alliance)라고 하는 낙태반대단체가 영국의 법원에 「인간수정·배연구법」은 단지 정자와 난자에 의한 수정과 그 배아만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결과, 수정(fertilisation)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자가 생식에 사용되지 않는 인간복제는 「인간수정·배연구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영국의 법원이 인간복제는 「인간수정·배연구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인간복제금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²¹⁾

d) 스위스 (a) 스위스에서는 배아보호와 인간복제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스위스헌법 제119조는 「인간영역에서 생식의료와 유전공학」(Fortpflanzungsmedizin und Gentechnologie im Menschenbereich)이라고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스위스헌법 제119조 [인간영역에서의 생식의료와 유전공학]²²⁾

1. 인간은 생식의료기술 혹은 유전공학의 오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Northern Ireland,

2. Short title and extent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2) This Act extends to Northern Ireland.

(3) Her Majesty may by Order in Council direct that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e to extend, with such exceptions, adaptations and modifications (if any)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to any of the Channel Islands.

21) 자세한 내용은 http://news.bbc.co.uk/1/hi/english/uk_politics/newsid_1677000/1677488.stm:
<http://straitstimes.asia1.com.sg/cybernews/story/0,1870,86937,00.html>.

22) Art. 119 Fortpflanzungsmedizin und Gentechnologie im Humanbereich

1 Der Mensch ist vor Missbrauchen der Fortpflanzungsmedizin und der Gentechnologie geschützt.

2 Der Bund erlässt Vorschriften über den Umgang mit menschlichem Keim- und Erbgut. Er sorgt dabei fü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der Persönlichkeit und der Familie und beachtet insbesondere folgende Grundsätze:

a. Alle Arten des Klonens und Eingriffe in das Erbgut menschlicher Keinzellen und Embryonen sind unzulässig.

b. Nichtmenschliches Keim- und Erbgut darf nicht in menschliches Keimgut eingebracht oder mit ihm verschmolzen werden.

c. Die Verfahren der medizinisch unterstützten Fortpflanzung dürfen nur angewendet werden, wenn die Unfruchtbarkeit oder die Gefahr der Übertragung einer schweren Krankheit nicht anders behoben werden kann, nicht aber um beim Kind bestimmte Eigenschaften herbeizuführen oder um Forschung zu betreiben; die Befruchtung menschlicher Eizellen

2. 연방은 인간의 배아와 유전형질과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연방은 법률을 제정할 때에 인간존엄, 인격,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배려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와 인간의 생식세포의 유전형질이나 배아에 대한 조작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b. 비인간의 배아나 유전형질을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거나 인간의 배아와 융합할 수 없다.
- c. 의학적 조력을 받는 생식의 절차는 단지 불임 혹은 난치병유전의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일정한 특성을 가진 아이를 출생시키기 위하여 혹은 연구를 위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여성의 체외에서의 난자세포의 수정은 단지 법률이 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여성의 체외에서는 단지 바로 착상을 할 수 있는 수 만큼의 난자세포만을 수정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d. 수정란제공 및 모든 종류의 대리모는 금지된다.
- e. 인간의 배아와 수정란으로부터의 산출물은 거래할 수 없다.
- f. 개인의 유전형질은 그 개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하고,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다.
- g. 모든 개인은 자기의 출신에 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b) 스위스에서는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공생식의료법 (Fortpflanzungsmedizinengesetz 1998)을 통하여 인간복제를 규제하고 있다. 인공생식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형벌로 인간복제와 키메라·하이브리드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다.

인공생식의료법 제36조 [인간복제, 키메라와 하이브리드의 형성]²³⁾

ausserhalb des Körpers der Frau ist nur unter den vom Gesetz festgelegten Bedingungen erlaubt; es dürfen nur so viele menschliche Eizellen ausserhalb des Körpers der Frau zu Embryonen entwickelt werden, als ihr sofort eingepflanzt werden können.

d. Die Embryonenspende und alle Arten von Leihmutterschaft sind unzulässig.

e. Mit menschlichem Keimgut und mit Erzeugnissen aus Embryonen darf kein Handel getrieben werden.

f. Das Erbgut einer Person darf nur untersucht, registriert oder offenbart werden, wenn die betroffene Person zustimmt oder das Gesetz es vorschreibt.

g. Jede Person hat Zugang zu den Daten über ihre Abstammung.

23) FMedG Art. 36 Klonen, Chimaren- und Hybridbildung

1. 인간복제, 키메라, 하이브리드를 생성한 자는 형벌로 처벌한다.
2. 역시 키메라 혹은 하이브리드를 여성이나 동물에 이식한 자도 처벌한다.

(3) 국제기구

a) 유럽평의회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가이드라인 혹은 협약·선언을 통하여 인간복제를 규제하고 있다.²⁴⁾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http://www.coe.int/>)는 연구목적으로의 인간배의 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협약」(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을 조인하고, 다시 「생명윤리협약추가정서」(1997)를 통하여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클론 기술의 사용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협약 제18조²⁵⁾

1 Wer einen Klon, eine Chimäre oder eine Hybride bildet, wird mit Gefängnis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Chimäre oder eine Hybride auf eine Frau oder auf ein Tier überträgt.

24) 인간복제에 관한 국제기구의 대응상황

국제기구	인간복제에 관한 규제의 근거규범	내 용	상 황
유럽의회	「인권과 생명과학에 관한 협약」(1997.4)	* 체외수정 수정란의 취급을 정한 일반조약 * 연구목적을 위한 수정란의 생산을 금지	유럽 40개 국가 중 13개 국가가 비준- 미발효
	「인권과 생명과학에 관한 협약추가정서」(1998.1)	* 유전학적으로 동일인을 생산할 목적으로 클론기술의 사용금지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등 24개국이 비준하여 3월 1일 발효, 영국 독일 벨기에 등 16개국은 아직 미비준
세계보건기구	「인간복제기술에 관한 결의」(1997.5)	클론기술의 인간에의 적용을 불인정	클론기술을 인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로 결의 채택
유네스코	「인간계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1997.11)	* 인간계놈의 취급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 * 인간의 복제개체생산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	제29회 총회에서 세계선언으로 채택

25)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Article 18 [Research on embryos in vitro]

1. Where the law allows research on embryos in vitro, it shall ensure adequate protection of the embryo.
2. The creation of human embryos for research purposes is prohibited.

(1) 법률이 체외에서 수정된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때에는 배아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구목적을 위한 인간배아의 생성은 금지된다.

생명윤리협약추가개정서 제1조²⁶⁾

1. 다른 생존하고 있는 혹은 사망한 인간과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인간개체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2. 이 조항에서 “다른 인간과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인간개체와 같은 핵유전자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b)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 <http://www.who.int/>)는 1997년 5월 5일에서 1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세계보건총회(the Fiftieth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인간개체에 적용하기 위한 클로닝의 응용은 윤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의 완전성과 도덕성에 반한다고 결의하였다.²⁷⁾

c) 유네스코 유네스코(UNESCO, <http://www.unesco.org/>)도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여 인간존엄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인간의 클론개체의 생산을 들고 있다.

유네스코의 보편선언 제11조²⁸⁾

인간복제와 같은 인간존엄에 위배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가 및 국제기구는 인간존엄에 위배되는 행위를 확인하고, 국가적·국제적으로 선언에

26) 1. Any intervention seeking to create a human being genetically identical to another human being, whether living or dead, is prohibited.

2.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human being “genetically identical” to another human being means a human being sharing with another the same nuclear gene set.”

27) <http://www.who.int/archives/inf-pr-1997/en/97wha9.html>.

28)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Article 11

Practices which are contrary to human dignity, such as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 shall not be permitted. Stat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invited to cooperate in identifying such practices and in taking, at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Declaration are respected.

서 제시된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를 권고한다.

d) 유 엔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엔에 대하여 총회에서 인간복제를 일절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하였다.²⁹⁾ 또한 지난 2001년 11월 19일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발의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³⁰⁾ 유엔에서의 결의안의 채택은 국제협약의 초안작성을 위한 첫 조치로서 국제협약에는 복제연구를 어느 선까지 금지할 것인지, 자금지원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 유럽연합 유럽연합(European Union, <http://europa.eu.int/index.htm>)은 2000년 12월 7일에 「유럽연합의 기본권에 관한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을 채택하여 인간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기본권에 관한 헌장」은 단순히 선언적 지위만을 가질 뿐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의 제정을 요구하거나 그 내용의 법적인 실현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유럽연합의 기본권에 관한 헌장 제3조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³¹⁾

1. 모든 인간은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의학과 생물학의 영역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29) 한국일보 2001//08/09, "인간복제금지 유엔이 나서라" 참조. 역시 France and Germany Seek International Human Cloning Ban, http://www.eclj.org/news/euro_news_010823_intl_cloning.asp 참고.

30) 동아일보 2001/11/20, 유엔, 인간복제금지협약 마련 촉구.

31)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European Union Article 3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pers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or her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2. in the fields of medicine and biology, the following must be respected in particular:

-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laid down by law,

- the prohibition of eugenic practices, in particular those aiming at the selection of persons,

- the prohibition on making the human body and its parts as such a source of financial gain,

- the prohibition of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

-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전의 설명에 의한 해당자의 자유로운 동의,
- 특히 인간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행위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재료로서의 인체 혹은 그 부분의 이용의 금지
- 인간의 생식적 복제의 금지

(4) 일 본

일본에서는 「인간에 관한 클론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중의원에서 4회, 참의원에서 3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00년 11월 30일에 성립하고 2000년 12월 6일에 공포되어 있다. 「인간에 관한 클론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개인을 복제하는 클론, 인간과 동물의 세포와 기관이 혼합된 키메라, 인간과 동물의 수정에 의한 하이브리드 3종의 개체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론배, 인간동물혼합배, 인간성융합배 혹은 인간성집합배를 인간 혹은 동물의 태내로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내지 양벌의 병과라고 하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다. 국 내

1997년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복제실험의 연구개발 및 연구비지급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장영달의원 외 46인)이 발의된 경우가 있고,³³⁾ 다시 1998년에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32) 자세한 내용은 町野朔, ヒトに關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 - 日本初の生命倫理法 -, 法學教室 247(2001.4), 86면; 大洞龍眞, ヒトに關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197(2001.4.1), 44면 참조.

33)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i) 인간복제실험, (ii) 인간과 동물의 배반포를 융합하는 행위, (iii) 동물에게 인간의 배반포를 이식하는 행위나 인간에게 동물의 태아를 이식하는 행위, (iv) 유전자요법을 통한 인간의 정자·난자·배반포를 변조하는 행위, (v) 태아 및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배반포를 만드는 행위, (vi) 그 영향이 다음 세대로 전이될 여지가 있는 인간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 (vii)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지하고, 다만 유전학연구와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회의원 외 35인)이 발의되어 복제기술의 인간에의 적용을 규제하려고 한 경우가 있으나,³⁴⁾ 모두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상태에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윤리문제 이외에도 생명안전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달리 주로 생명윤리문제에 중점을 둔 본격적인 인간복제금지법안(황규선의원 외 16인)의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역시 인간복제금지법안도 법률로 성립하지 못하고 현재는 자동폐기되어 있다.³⁵⁾

최근 과학기술부는 인문사회과학자, 시민·종교단체 대표, 생명과학자, 의학자로 구성되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http://www.kbac.or.kr/>)를 구성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인간복제의 허용 여부와 범위, 인간유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³⁶⁾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를 마련하여 학계 및 시민·종교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2000. 12. 6)까지 마친 상태

34) 주요내용으로서 (i)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ii)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iii)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iv) 인간의 태아나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유전학연구와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입법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의 한계, 의료법학 창간호 (2000), 367면 이하.

36) 연구결과를 통하여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골격([http://www.kbac.or.kr/생명윤리기본법\(가칭\)기본골격.htm](http://www.kbac.or.kr/생명윤리기본법(가칭)기본골격.htm))에 의하면 「생명복제와 중간교잡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i) 체세포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이를 지원, 방조, 교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ii) 체세포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동물의 복제는 인정한다. 단,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거나 종(種)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iii) 인간과 동물의 중간교잡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iv) 위 사항을 위배한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이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금년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³⁷⁾

IV. 生命複製의 贊反論據³⁸⁾

1. 복제찬성론의 논거

가. 인간복제의 무해성

자연적 성교 혹은 인공임식방법을 통하여 자가 태어나듯 인간복제를 통한 자의 출생도 인간생식의 일종이며, 인간복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도덕적·윤리적으로 비난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³⁹⁾ 인간복제의 무해성으로 인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굳이 들 필요가 없고,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나. 생식권 혹은 생식의 자율성에 기한 복제의 자유

생식권 또는 생식의 자율성(procreative autonomy)에 의하여 자를 출산

37) 생명과학보전안전윤리법(안) 제11조는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 개체를 인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보전안전윤리법(안) 제12조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로서 (i)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ii)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iii)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iv) 인간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나 동물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인간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다른 인간의 유전정보를 가진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38) 생명복제에 관한 자세한 기본적인 논의에 관하여는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의 한계, 의료법학 창간호 (2000), 361면 이하;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2000), 296면 이하; 노혁준, 인간복제의 법리, 법조 2000/4, 107면 이하 참조.

39) 찬성론자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복제가 오히려 더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선택적이고 의지적이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유성생식보다 더 권장되어야 할 자연스러운 번식방법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노혁준, 인간복제의 법리 -헌법상 문제점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법조 2000/4(통권523호), 108면 참조).

하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자를 출산할 권리를 가지고, 자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즉 자연적 방법으로, 인공적 임신기술에 의하여 혹은 복제를 통하여 출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생식의 자유를 가진다고 본다.⁴⁰⁾ 특히 복제기본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인간복제는 의학적인 조력에 의하여 생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자연적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전적 선택과 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복제에 의하여 자를 출산할 권리까지가 생식 및 출산을 결정할 권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상적으로는 자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과학적으로 자신과 닮은 자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고 금지한다면 헌법상의 모성보호규정(헌법 §36 II)과 행복추구권에 반할 수 있다고 한다.

다. 학문·연구의 자유

헌법 제22조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는 당연히 복제를 연구할 권리도 포함되며, 만일 법률에 의하여 인간복제 혹은 이에 대한 연구를 제한한다고 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⁴¹⁾

라. 인간복제의 잠재적 효용성

(1) 질병의 회피

부부의 일방이 어떤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자를 출산하면 그 질병이 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다른 일방의 체세포의 핵을 이용한 복제에 의하여 그 질병을 가지지 않은 자를 출산할 수 있다. 만일 유전적 질환을 지닌 일방이 처인 때에는 부의 세포핵을 처의 난자에 삽

40) 강희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New Millennium 법 - 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529-530면은 인간의 생식권 및 자식의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 이전에 인간에게 부여된 근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41) 반대의견은 학문·연구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고,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생명을 연구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입하여 자를 출산하면 질병의 유전을 회피하는 동시에, 유전적으로는 물론이고, 부부의 감정상으로도 '두 사람의 자'라고 생각할 수 자를 얻을 수 있다.

(2) 천재의 복제

복제기술이 적극적 우생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이용되면 히틀러 혹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의 복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⁴²⁾

(3) 자기의 복제

인간복제를 하는 동기로서는 자기의 복제를 만들어 不死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도 생각할 수 있다.⁴³⁾

(5) 죽은 자의 소생

사랑하는子を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잃은 부모가 클론기술을 통하여 죽은 자와 똑같은 아이를 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6) 치료에 필요한 장기의 확보

장기이식은 면역반응을 생각할 때, 자기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장기나 기관을 이식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다. 그러므로 질병자의 세포를 이용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나 기관의 확보를 목적으로 복제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⁴⁴⁾

42) 실제로 복제기술에 의하여 천재를 복수로 카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선 이식되는 핵을 가진 체세포는 살아있어야 하며, 사망한 사람의 복제는 체세포가 냉동보존되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복수복제는 이론상 가능하나, 핵이식에 의한 배아가 착상하여 출산에 성공할 비율은 별도로 하더라도 인공자궁과 같은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복수의 복제인간을 생성하기 위하여는 그 만큼 많은 여성이 출산에 동원되어야 하여 대량출산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또한 천재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복제에 의하여 사회 전체의 변혁을 피하기 보다는 개인을 위하여 천재적 능력을 가진 자를 갖고자 하는 사적 야망이 강하지만, 그 야망이 복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지도 의심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표현형질, 즉 형·색·크기·기능과 같은 표면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형질이 전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고, 자궁환경을 포함한 외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유전자가 표현형질에 관여하는 비율은 30% 정도라고 하며, 성격이나 지적 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생육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3) 일란성쌍생아의 예에서 보듯이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인격이 그대로 수제되어 중복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복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충족시킨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다.

44) 특히 배아복제에 의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특정한 세포나 장기를 만들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한국일보 2001/1126, 난치병치료 전기 '明' 복제인간 길 '暗' 美 ACT社).

(7) 불임치료의 연장

부부가 모두 불임인 경우에는 어느 체세포를 클로닝하여 제3자의 여성에게 이식하여 자를 얻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부부의 체세포를 이용한 클론은 자기의 클론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동기가 불임치료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차이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이 무정자증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생식을 행하나, 타인의 정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인간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남성의 체세포로부터 여성의 난자에 핵이식을 하면 유전적으로 남성만의 특성을 받지만, 이용된 난자가 제3자의 난자가 아니고 부인의 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자기의 자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난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비록 제3자의 난자가 이용되기는 하지만, 부부 중 어느 누구의 체세포의 핵이 이식되는 결과 제3자의 유전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의 자를 출산할 수 있다고 본다.

(8) 동성커플의 자

클론기술은 레즈비언이나 게이와 같은 동성커플이 자기의 자를 가질 수 있는 임신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同性關係를 법적으로 보호할 때, 레즈비언·게이커플이 자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종래 입양 혹은 레즈비언인 경우에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어느 일방의 인공생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클론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체세포의 핵을 상대방의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을 통하여 2인의 공동작업에 의한 임신·출산이 가능하고, 역시 게이커플에서도 어느 일방의 체세포의 핵을 제3자의 난자에 이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자를 가질 수 있다.

(9) 사망한 夫의 複製

사랑하는 남편을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잃은 처가 죽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부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부를 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인간배아복제 성공 논란). 특히 미국의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의하면 배아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5년에 3천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2. 복제반대론의 논거

가. 인간존엄성의 존중

인간의 생명이 수정의 순간부터 개시된다고 볼 때, 혹은 적어도 수정란이나 정자·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인간생명의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입장에 의하여 인간복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 수반되는 결과, 그를 통하여 생명의 가치를 경감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만일 동식물의 육종과 같이 클론기술의 특징인 예견가능성을 이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한 성질을 가진 인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인간을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도구로 이용하게 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인간클론에 고유한 문제로서 이미 존재하는 특정한 개인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인간을 만드는 결과, 비록 체세포의 제공자와 다른 인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의식되어야 하여 실제 태어난 인간과 체세포의 제공자 사이의 관계가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헌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관계로 발전될 위험이 크다.

나. 유일성 혹은 개성의 권리의 침해

지금까지는 인간이 모두 새로운 유전형질을 가진 생명체로서 세상에 출생하나, 인간복제에 의하여는 언제나 이미 지상에 존재한 인간과 같은 유전형질을 가진 인간이 탄생한다. 복제라고 하는 생식방법을 통하여는 동시에, 또한 상이한 시기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다수 얻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만 고유하고 반복될 수 없는 유일성 혹은 자신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자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고유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유전형질의 복제로 인하여 인간의 비반복적 유일성 혹은 개성에 대한 권리(right to individuality)가 침해된다고 본다.⁴⁵⁾ 특히

45) 김형성, 생명공학과 헌법적 과제, New Mille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2000), 483면; 노준혁, 인간복제의 법리 - 헌법상 문제점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법조 2000/4(통권523호), 126-127면.

인간의 비반복적 특질은 인간존엄·가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 동의나 승낙을 통하여도 포기될 수 없다고 본다.

다. 인간복제의 위험성

(1) 유전적 다양성상실의 위험

보통 양성에 의한 수정란형성에서는 친자 사이에 DNA의 배열이 전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모의 난자와 부의 정자로부터 각각 하나씩 수계를 받은 염색체가 결합하는 결과, 반은 모로부터, 반은 부로부터 염색체를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모와도 부와도 다른 염색체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 태어난다. 또한 생식세포가 감수분열을 할 때, 부모(자로서는 보편 조부와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2개의 염색체가 교차하거나 부분적으로 교환되어 2개로 다시 분열하여 동일인의 정자 혹은 난자라고 하더라도 미묘하게는 DNA배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형제자매에서도 개성이 각각 다르며 유전정보의 다양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양성에 의한 수정란으로부터의 출산이 아니고 일종의 무성생식인 인간복제에서는 다른 사람과 전적으로 동일한 DNA배열을 가진 자가 태어날 수 있고, 복제기술의 이용이 증가하면 인류 전체로서의 유전정보의 다양성이 파괴(loss of genetic variation)될 위험이 있다. 물론 인간의 개성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과의 복합작용으로 형성된다고 볼 때 복수의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인간의 개성이 모두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전정보의 다양성이 상실되면 전염병에 대한 자연의 방어체계가 약화되어 복제집단의 어느 일원이 질병에 걸리면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될 위험이 있고, 결국 인류 전체의 존망에 관계되는 가공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2) 노화의 위험

인간복제를 위하여 성인의 체세포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세포 자체 혹은 그 핵내의 유전자가 이미 노쇠되어 있는 결과, 복제로 태어난 자의 수명이 그 만큼 단축되고 암 기타 질병의 위험이 증대할 위험이 있다. 또한 직접 복제로 출산된 자의 수명뿐만 아니라 그 자가 출산한 다음 세대에 게도 早死의 危險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⁴⁶⁾

(3) 사회적 악용의 위험

예를 들어 범죄조직이 수사를 혼란시킬 목적이나 스파이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경우 혹은 오직 전쟁·노동에 동원하기 위하여 힘이 세거나 건장한 클론인간을 생성하는 경우와 같이 복제인간이 사회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4) 안전성의 위험

동물복제의 실패율로 미루어 볼 때, 인간복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조산·사산률 비롯하여 기형아, 정신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크고, 비록 복제에 성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된다.⁴⁷⁾ 동물복제를 보면 95%가 배아상태에서 숨지고, 출산을 한 때에도 바로 죽은 경우도 많다고 하며, 자궁에 성공적으로 착상된 복제동물배아 중 출산 뒤까지 정상적으로 자란 동물은 25%에 불과하다고 한다.⁴⁸⁾ 또한 인간복제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유전적 또는 물리적 이상에 의한 자연유산될 위험으로 인하여 배아를 착상한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한다.⁴⁹⁾

46) 최근 아돌프 히틀러를 전범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유해에서 유전자를 추출하여 히틀러를 복제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동아일보 2001/08/09, 사교집단 히틀러 복제 기도 참조).

47) 1997년에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기까지 무려 276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며, 양의 생식력이 인간의 3~4배인 점을 감안할 때 1명의 성공적인 복제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하여는 적어도 1000번의 임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동아일보 2001.4.2, 「인간복제 '성공률 제로' 위험한 도박」 참조). 역시 Joseph Farnworth, To Clone or not Clone: The Ethical Question, http://farnworthfamily.tripod.com/Humancloning/cloning_m.htm 참조.

48) 동아일보 2001.3.20, 「인간복제 싸고 과학-법-윤리 '평행선」」 참조. 다만 인간복제가 동물복제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간은 세포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동물보다 안정되어 동물복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종양을 억제하고 태아성장을 조절하는 IGF2R라는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그 동안 복제에 성공한 양, 돼지, 쥐 등은 문제의 유전자가 1개 밖에 없어서 자연임신할 때와는 달리 복제할 때에는 이 유전자의 이상으로 거대한 태아, 기형아, 암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동물은 모로부터 이 유전자 1개만을 유전받고 부의 유전자는 온전하기는 하지만 기능이 정지되나, 인간과 영장류는 부모 양측으로부터 1개씩의 완전하게 기능하는 유전자를 받아 복제의 경우에도 문제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한다.

49) 역시 노혁준, 인간복제의 법리, 법조 2000/4, 110면 참조.

(5)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위험

a) 인간(혹은 자)의 수단화 죽은 자의 회복, 혹은 장기의 확보를 위한 클론 혹은 노동력제공·전쟁동원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인간복제와 같이, 복제인간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하여 복제로 태어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second-class citizen).

b) 인간(혹은 자)의 상품화 클론에서는 처음부터 우수한 체세포의 매매와 같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작물을 공급하듯, 주문에 따라서 제조된 인간을 인간이 팔고 살 수 있다고 하면 복제인간은 중세사회의 노예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된다고 본다.⁵⁰⁾

c) 우생사상의 위험 인간복제를 통한 천재아의 대량생산이라고 하는 꿈은 어쩌면 우생사상에 연결되는 악몽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클론이 우생적 이유로 실시되지는 아니하지만, 예컨대 질병의 회피를 위한 클론과 같은 경우에는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본다.

d) 프라이버시권의 박탈 모든 개인은 자신의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적 영역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가진다. 또한 정자와 난자의 결합과 같이 양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유전인자를 우연히 획득하고 누구도 그 정보를 지배하지 못하나, 복제인간에서는 생명이 개시될 때부터 생산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 유전인자가 결정되고 그 순간에 복제인간의 모든 유전정보가 놓이게 된다. 만일 복제인간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그 유전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심히 침해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 복제의 비자연성 인간적 방법으로 태어날 권리의 침해 인간복제는 신으로부터 창조된 질서를 파괴하는 비자연적,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50) 김형성, 생명공학과 헌법적 과제, New Mille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2000), 483면.

하는 주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권리가 있으나,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무성생식을 통하여 인간을 만드는 클론은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인간의 인간적·자연적으로 태어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V. 複製人間의 法律問題

1. 허용성⁵¹⁾

(1) 장차 인간복제나 그 연구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헌법상 학문·연구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체나 인간의 본질을 연구·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복제에 대하여까지 학문의 자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 또한 인간의 신체의 일부부만에 대한 부분복제, 예컨대 심장이나 뇌와 같은 장기만을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지만, 역시 인간의 부분복제도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인간복제는 人間의 非反復的 同一性을 침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을 파괴할 위험이 크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에서 唯一回的 存在이며 자기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자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고유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간이 복제로 태어난다고 하면 인간존엄의 본질적 요소인 비반복적 특성에 반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는 원칙에 위반한다.

(2) 인간은 누구나 인간적 방법으로 출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인간은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태어나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경

51) 허용의 여부와 허용한계에 관한 논의는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한계, 한일법학회 제17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89면 이하 참조. 역시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법조 1999/7, 5면 이하 참고.

우에 한하여 정자와 난자의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적·인위적 방법을 통한 포태·임신이 허용될 뿐이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경우에는 생식세포복제이든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이든 인간이 전혀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적 방법으로 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생식세포복제에서는 비록 생식을 위하여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성립하지만, 그 결합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닌 자기의 탄생을 위하여 다시 이용되고, 특히 체세포복제에서는 남녀의 결합을 전혀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인간생식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3) 인간이 복제된다고 하면 인간이 수단화·상품화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인간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누군가 철인과 같이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힘센 인간의 복제를 대량으로 주문하여 복제인간을 예컨대 노동력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된 인간을 상품화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바로 상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클론자의 사법적 문제

가. 혼인관계 혹은 가족관계의 변화

부부관계에서 인간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생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혼인관계 혹은 가족관계가 파괴된다. 클론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성이 서로 결합하여야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양성에 의하지 않는 무성생식은 박테리아·세균과 같은 원시적 생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인간에게서는 '창조적 공동성'이라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특징을 인간존재의 출발로 삼아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공생식(인공수정·체외수정 및 대리모임신)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때에도 단순히 '자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2인 사이에 불행하게도 창조적 공동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부부를 원조한다고 하는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복제는 자를 가질 때에 수반하는 '공동성 그 자체'를 무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술로서 인공생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등한 관계에서 이성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인간 혹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공동적 인격전개의 원칙을 무시하는 복제기술은 인간을 구원하는 기술,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말 할 수 없고, 법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클론기술이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치료라고 하는 기대를 일응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인간복제는 '자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과 그로부터 생긴다고 기대되는 가족관계(부부관계·친자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친족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해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친자·형제자매관계의 붕괴

엄밀한 의미에서 클로닝에 의하여는 '자기의 자'를 얻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복제에 의하여 태어난 자는 유전적으로는 체세포의 제공자와 일란성쌍생아에 불과하여 보통 형제자매의 관계가 될 뿐이다. 만일 처가 체세포를 제공할 때에는 본래는 자기의 자를 낳고자 하지만, 유전적으로는 자기의 자매를 낳는 경우가 된다. 체세포제공자가 분만자의 혼인상대방인 夫로서 그 체세포핵을 핵이 제거된 처의 탈핵난자에 이식하여 활성화한 후에 복제배아를 부인의 자궁에 착상시켜 처가 부의 복제아를 출산한 때에는 유전적으로 부의 쌍둥이 형제자매를 출산한 경우로 된다. 결국 인간복제에서는 친자관계와 형제자매관계가 융합·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부부가 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아를 출산시키는 경우에는 그 자(체세포제공자)와 태어난 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양자는 '친자'인 동시에 형제자매, 즉 '자연된 쌍둥이동생' 혹은 '세대가 다른 쌍둥이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전적 형질로부터 보면 복제아는 복제된 자와 세대가 다른 일란성쌍생아로서의 위치에 있고, 한편 복제를 하는 부모의 논리와 감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복제된 자(체세포제공자)가 생명의 발생원인인 체세포의 소지자인 이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가진다.⁵²⁾

본래 자를 출산한다고 하는 사실은 자를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일방적인 희망실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자의 출산을 통하여는 친자라고 하는 특별한 '인격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모는 태어난 자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하나의 독립한 인격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를 보호교양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친자관계와 형제자매관계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복제를 통하여는 친자·형제자매관계의 모순이 현저하게 나타난다.⁵³⁾

물론 복제로 태어난 자가 유전적으로는 형제자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분만한 사실, 혹은 당사자의 의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반론도 상상할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어느 일방을 복제하기를 위하여 복제된 배아를 부인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자를 출산한 경우에 그 체세포제공자가 부부 중 누구이든 그의 자로 보면 충분하고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고, 현행민법에 의하여도 그 부부를 복제아의 법적 모와 부로 볼 수 있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같은 인공생식에서는 친자관계의 확정과 관련하여 유전적 관계 이외에 분만, 의도와 같은 사실에 중점을 두고 친자관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인간복제에서는 본래 유전적 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고 클론기술을 선택하는 결과 분만의 사실이나 의도에 따라서 친자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⁵⁵⁾ 결국 유전적으로 보면 클로닝에 의하여 생긴 자는 부모에게는

52) 복제된 사람과 복제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강회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New Millennium 법 - 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536면 참조).

53) 인공생식에서는 보통 「누가 부모인가」 하는 친자관계내부에서의 지위가 불확실한 문제가 제기되지만, 인간복제에서는 「친자관계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54) 강회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New Millen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535면.

55) 강회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New Millennium 법 - 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535-536면은 복제기술은 수평적 관계에서는 성적 결합, 수직적 관계에서는 유전적 동질성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의 가족관념을 희석시키고, 적어도 수직적 관계에서는 유전적 관계보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개념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형제자매가 될 뿐이고, 복제기술을 통하여 '자기의 자'를 가진다고 하는 기대는 자기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인간복제에서는 부모(희망자)의 동기·의도가 항상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고, 친자로서 완전한 유전적 관계를 원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혈연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다고 보는 의식이 있을 뿐인 결과, 친자관계는 후에 부모(희망자)의 판단에 일임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부모(희망자)에게 판단을 일임하면 태어난 자에게도 혈연의 범위내에서 친자·형제자매관계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자기는 그 부모의 자가 아니라 형제자매가 되고 싶다고 하는 복제아의 선택도 부모(희망자)는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인가 형자자매인가의 선택은 친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일 복제아가 자신을 부모(희망자)의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면 본래 복제아에 대하여 조부·조모로 되어야 할 사람이 부모로 되어야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혹은 복제아에게 만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그 복제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양자의 관계가 숙부·숙모와 조카의 관계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인간복제에서 친자·형제자매관계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도에 일임할 때에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의 희망이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친자관계를 포함한 친족관계 그 자체가 붕괴될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제아-부모-관계

가. 복제아의 부는?

현행 가족법에 의하면 혼인중에 포태된 자는 그 夫의 親生子로 추정된다(민법 §844 I). 물론 본래 포태란 자연적 성결합에 의한 경우만을 예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인공적인 임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포태가 반드시 자연적 임신만을 의미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만일 복제기술에 의한 출산에 대하여까지 민법 제844조 제1항을 적용한다면 체세

포획의 제공자가 부부 중 누구이든 일단 혼인중에 처가 포태하여 출생한 複製兒의 父는 그 夫로 추정된다.

또한 인간복제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남녀 사이 혹은 동성 관계(예컨대 레즈비언·게이와 같은 동성연애그룹)는 물론이고 독신자에게도 가능하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복제아가 태어나면 혼인외의 자로서 인지를 통하여만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복제기술에 의하여 레즈비언커플 중 어느 일방의 임신으로 출생한 자 혹은 미혼여성이 자기의 체세포를 이용한 클로닝으로 출산한 자는 처음부터 부를 예상하지 않은 자, 즉 '부 없는 자'(vaterloses Kind)가 될 수밖에 없다. 만일 게이가 자신 자신을 복제하여 타인의 자궁을 빌려 임신을 시킨다면 '대리모를 이용한 인간복제'로서 유전적으로는 부만이 있을 뿐이지만, 법적으로는 체세포제공자인 게이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없고,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인지를 통하여 부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뿐이다.

나. 복제아의 모는?

(1) mater semper certa est

민법상 모자관계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가를 정한 규정은 없으나, 로마법 이래 자와 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생긴다고 본다.⁵⁶⁾ 棄兒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인지가 없더라도 모자관계가 성립하며, 특히 '모는 항상 확실하다'(mater semper certa est)고 하는 법언에 따라서 모자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상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모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인간생식기술·대리모법모델안」(Model Human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Surrogacy Act) 제2-10조는 모자관계에 관하여 '본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를 출산한 여

56) 김주수, 가족법, 248면: 徐廷友, 親生子關係不存在 確認判決의 既判力과 親生推定の 衝突: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 566 판결과 관련하여,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재판자료 제62집, 1993/12), 658면.

성이 자의 모가 된다'고 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1992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인공생식의료법에 의하여 오스트리아민법 제137b조에는 '모는 자를 출산한 여인이다'(Mutter ist die Frau, die das Kind geboren hat)라고 규정이 신설되어 있다.

(2) 인간복제와 모

인간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공자궁」이 실용화되지 않는 한, 복제된 배아를 임신·포태할 여성이 인간복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제된 배아는 처나 복제아를 원하는 여성이 스스로 포태할 수 있고, 미혼의 남성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거나 여성 자신이 포태하기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포태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모를 이용하여 포태할 수도 있다. 모자관계의 확정에서는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든 아니든, 혹은 임신모가 복제에 필요한 핵이 제거된 난자를 제공한 경우이건 단순히 활성화된 배아의 수태를 위하여 자궁만을 제공한 경우이건 상관 없이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이 항상 태어난 자의 모가 된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4. 복제인간의 부양권·상속권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974 i),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0 I i). 또한 민법은 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권이나 상속권에서 그 출생방법이 성교인지, 인공생식인지, 혹은 복제인지에 따른 구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가 자연적 성결합에 의하여 출생하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태어나든 또는 복제아이든 관계없이 자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권·상속권을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친자관계는 언제나 법정친자관계이며, 원한다고 하여 혈연관계도 없이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강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 혹은 부가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임신을 처가 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부의 동의 없이 모가 복제를 통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당연히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법적으로 자에게 부에 대

한 부양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된다.⁵⁷⁾

물론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여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 그 수태방법과는 무관하게 - 상속권이 있다. 다만 인공생식이나 인간복제에서는 냉동보존된 정자나 수정란 혹은 체세포를 이용하여 처는 부가 사망한 후에도 부의 자를 임신·포태할 수 있다. 부의 사망 후에 그 자를 임신·포태한 처가 출산을 하면 그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법상 상속에 적용되는 동시존재의 원칙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태아에게 상속이 인정되기 위하여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태아로서의 지위, 즉 적어도 모태에 착상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태아란 배아의 착상으로부터(착상설) 완전노출할 때까지의(전부노출설) 생명체를 가리킨다고 볼 때, 정자나 수정란 혹은 체세포만으로는 상속능력을 가질 수 없고, 비록 부의 사망 후에 착상되어 자로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혹시 부가 정자나 수정란을 인공생식을 위하여, 또는 체세포의 복제를 위하여 냉동보존시킬 때에 자기가 사망한 후에 처가 그로부터 자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한 경우에 - 물론 태아의 수증능력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 처가 부의 사망 후에 비로소 포태를 한 때에는 유증이나 증여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5. 잡종인간의 법률문제

예를 들어 인간과 원숭이와 같이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생식세포를 결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탄생시키는 경우를 키메라 혹은 하이브리드(半獸半人의 生物)라고 한다. 인간과 동물의 교배물을 가능하게 하는

57) 복제아는 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배우자 또는 동의하지 아니한 동반자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강희원, 인간복제의 법적 함의: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New Millennium 법-법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책(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548면).

행위로서는 (i) 동물의 정자를 인간의 난자에 수정시키거나 인간의 정자로 동물의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ii)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인간의 난자에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으로부터 추출한 핵을 융합하는 행위, (iii)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iv)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체세포를 인간의 배아와 융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잡종인간의 생성도 클로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을 해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특히 독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수정란보호법」을 통하여 인간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아울러 키메라·하이브리드의 실험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VI. 결 론

법이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공학으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예언한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의 멋진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에 대한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도전에 대하여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혹은 응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명과학이 제기하는 심각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각종의 수많은 논의도 있고, 생명과학이 던지는 개별적 분야에 대하여, 혹은 전체에 대하여 학문적(과학적·윤리적·법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고도 있다. 그러나 상상하기조차 힘든 생명과학의 새로운 발달과 함께, 또 다시 해결하여야 할 법률문제가 날로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 생명과학이 제기할 법적 과제는 장차 그 끝을 찾을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과학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세계적인 대세는 아무래도 입법화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영국이 생명과학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대두되는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일본에서도 인공생식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민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1990년에 「수정란보호법」

을 제정한 독일을 비롯하여 스위스·오스트리아가 인공생식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민법에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민법규범이 성립하여 있다. 국내에서도 법공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생명공학의 법률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과학의 도전에 대응하여 그 동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혹은 필요한 논의를 계속 전개하면서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정리가 바로 요청되고 있다고 본다.

현대의 생명과학이 던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인간복제라고 할 수 있다. 배아복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론으로 하고, 복제인간을 출생시키기 위한 인간개체복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종래의 인간의 생식이 첨단의료기술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유성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반면에, 인간의 클론개체의 생산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의도적으로 출산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간의 생명탄생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다른 자연적·인공적인 생명탄생에 관한 기술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향을 인간사회에 가져오는 인간복제에 대하여는 인간의 생명탄생에 관한 다른 기술과는 달리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개체 혹은 하이브리드개체(인간과 동물이 교잡된 배에서 유래하는 개체)의 생산은 인간의 존엄과 안전성에 비추어 클론개체의 생산을 초월하는 문제를 가진 행위이며, 그 폐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지정토론문 — 辛 鍾 元*

생명복제를 보는 관점과 정책화의 쟁점

1. 생명복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동물복제의 산물을 경험한지 오래인 상황에서 21세기가 생명공학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는 말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복제인간의 등장도 언젠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 또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이루어지지 않겠나, 또 그 결과는 어떠할까 하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생명복제기술을 통해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동물을 복제할 수 있고, 인간에게 이식할 대체 장기의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량 동물의 대량 복제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 수 있으며, 멸종위기의 동물 보존 문제도 해결가능할 것이다. 인간 배아복제를 통해 세포성 질병 치유의 가능성을 열 수도 있으며, 인간개체 복제의 의료적 의학적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기술이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분야로서 잠재효력이 막강하다는 점, 의료적 의학적 산업적 필요성이 크며, '인류가 안고 있는 현재적 숙제의 해결 가능성'과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임이 분명하다.

2. 생명복제를 보는 관점과 주체는?

2년전 생명복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발표된 바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1999년 9월 열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에서 16명의 일반 시민패널은 인간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복제시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동물 복제의 경우에

*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대해서는 일부 완전금지의 의견(6인)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반성없는 복제 실험에 방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실험의 투명성, 감독 및 규제조항의 신설, 결과물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조건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윤리와 생명 안전문제를 염려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위 보고서의 결론을 적극 환영하였으며, 나아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내용, 혹은 제정될 수 있는 생명과학 윤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인간 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동물복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생명복제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기술은 인류의 영원한 3대 숙제인 식량, 질병, 생태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열쇠를 넘겨받아 안락하고 희망찬 21세기적 생활양식을 답습할 것인가"하는 생각과는 관점을 분명히 달리한다.

이런 차이는 생명복제를 보는 관점과 제도 혹은 정책적 판단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차에서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로부터 정책화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중심주의, 실용주의적 관점, 의료적 산업적 관점, 현재적 인류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 등이 지배적 관점이었던 반면, 이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생명복제는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적, 의료적 필요성 이전의 문제, 즉 생명의 본질과 정체성, 윤리문제이므로 과학기술자들의 영역과 별개라는 점, 즉 사회적 수용성을 전제로 한 정책화의 단계는 소위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민 상호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생명복제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의 인류가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와 결부되어 있는 생명공학이 현재 과학기술자들의 행위와 책임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 인류의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생명기술의 특허문제와 같이 생명복제의 경제사회적 이해관계와 정보독점과 불균형에 의한 기술 권력화의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이므로 과학기술의 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위

해 투자연구비의 일정액은 반드시 생명공학의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점이 생명복제 문제를 보는 관점과 주체를 설정하는 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